

예술문화대제전 규정

제정 2018.5.10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예술문화대제전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과 지역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·신인예술가 발굴·육성으로 문화강국 기반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예술문화대제전” 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“문체부”)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(이하 “한국예총”)가 매년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문화예술 종합경연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“예술대전(영문 Korea Art Festival)” 으로 한다.

제3조(예술대전에 관한 권리) 한국예총은 예술대전 관련 조직,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. 단, 이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개최 기간 및 장소)

- ① 예술대전은 매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예술대전 개최시기와 장소는 예술과 체육의 융합을 통한 효과(시너지 : Synergy)를 높이기 위해 ‘전국체육대회’ 시기와 연계하여 동일 시·도에서 개최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
- ③ 단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예술대전 명칭 등에 관한 권리) 상징마크, 명칭 등 예술대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예총이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예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단, 예술대전 관련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예외로 한다.

제 2 장 예술대전 운영위원회

제6조(설치) 한국예총은 예술대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술대전 운영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- ① 한국예총 회장과 개최지역 광역단체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임기제 위원을 위촉한다.
- ② 당연직 위원은 한국예총 정회원단체 이사장이며 임기제 위원은 개최지 광역시·도 연합회장과 예술문화계 전문가 등을 말한다.
- ③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와 운영분부를 둘 수 있다.
- ④ 운영분부는 한국예총 본부와 개최지 예총에 두며, 사무총장과 개최지 예총 지회장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대전 관련 현장지원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예총의 규정 및 예술대전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운영)

-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예술대전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예술대전의 조직,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2. 예술대전 관련 엠블럼 등 이를 사용한 휘장사업에 관한 사항
3. 기타 예술대전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판단을 요하는 주요사항

제9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된 때에는 신임단체장이 위원직을 승계하며, 임기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장 집행위원회

제10조(설치) 예술대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6조 ①항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구성)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2조(위원 등의 선임방법)

- ① 한국예총 사무총장과 당해 연도 개최지 광역시·도 연합회회장을 당연직 공동 위원장과 개최지 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다.
- ② 집행위원회 위원은 한국예총 광역시·도 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며, 위원장이 추천하는 예술문화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.

제13조(기능)

- ① 집행위원회는 실질적인 예술대전 개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기타 예술대전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실정에 맞게 정한다.

제1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제7조를 준용하며, 개최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4장 예술대전 종목

제15조(종목)

- ① 예술대전 정식종목은 건축, 국악, 무용, 문인, 미술, 사진, 연극, 연예, 영화, 음악 등 10개 종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참가종목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종목의 현황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신규 종목에 대한 문호확대를 위해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범종목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5장 광고 등 지적재산권

제16조(지재권 소유)

- ① 예술대전 개최회식 및 각 종목별 경영의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등 녹화 제작물, CI 등에 관한 권리는 한국예총의 독점적 권리이다.

- ② 예술대전에 사용되는 모든 광고에 관한 권리는 한국예총이 소유하며,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 등은 한국예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기타 유료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예총과 별도 협약에 따른다.

제6장 소청 및 처리

제17조(소청심의) 예술대전에 참가한 예술인 대표 및 응원단에 부정, 불미한 사실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 의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.

- ① 소청심 의 위원회는 ‘제9조(구성)’ 과 ‘제12조(위원 등의 선임방법)’ 의 적용을 받는 자를 위원과 위원장으로 5인 이내로 구성 한다. 단 소청과 관련된 해당 광역시·도 위원은 제외한다.
- ② 소청심 의 위원회는 처리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통신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소청심 의 결과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미신청시 재심신청 기간 만료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.
- ④ 소청심 의 당사자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재심결과는 통지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

제18조(징계) 소청심 의 위원회 결과 중대한 부정이 확인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.

- ① 경고 : 서면으로 부정 등 사실관계 통보 및 한국예총 홈페이지에 징계결과를 공지한다.
- ② 참가금지 : 부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예술인 및 광역 시도 운영진은 1년간 차기 대회에 참가를 금지한다.

제19조(규정준수의무)

- ① 예술문화 예술대전을 준비하거나 운영, 참여하는 관련 모든 단체는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.
- ② 해당단체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예총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제7장 예술대전 운영

제20조(참가요강 및 내규) 예술대전 참가, 운영, 채점 및 시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제21조(평가회 개최) 예술문화 예술대전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·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차기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한다.

제22조(사업비 정산) 예술대전 관련 국비 및 지방비는 정부의 ‘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’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한국예총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